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의 영향요인

임 창 호* · 김 윤 영**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 경찰관 107명이며, 독립변수는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2) 보호담당관제도, (3) 법률적 지원제도, (4) 민간 참여제도, (5) 가정생활 안정지원, (6) 지역사회 참여활동이고,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에 받게 되는 3가지 종류의 보호담당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법률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보안경찰, 신변보호 경찰관, 민간참여제도

*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제1저자)

**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교신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IV. 분석 결과 및 논의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I. 서 론

지난 3년간 매년 1,2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입국하고 있지만, 문화적 이질성과 한국사회 법제도에 대한 무지 등으로 인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적지 않은 범죄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갖게 된 획일적·폐쇄적 사고, 자발성·적극성·창의성의 부족, 배타적·독선적 성격, 제품의 질적 향상 무관심, 집단 의존적인 문제해결, 경쟁의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송관, 2001: 9-19; 안재운, 2005: 15-22).

200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피해율은 2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장준오·이정환, 2006), 또한 2008년~ 2010년까지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경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한생활 중 범죄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전체의 10.8%였으며, 이들 중 사기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들은 61.8%, 폭행·상해범죄 피해경험이 있다고 밝힌 북한이탈주민들은 25.4%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창무 외 3인, 2010).

특히, 북한이탈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경제적 기반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사기 및 성폭력 등 각종 범죄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탈북 후 지불한 브로커 비용, 구직난, 문화적 충격 등에 직면하면서 각종 범죄 유혹에 빠지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착지원 및 신변보호 자체에 대한 연구였고, 현행 정착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있어서 이들의 범죄피해 취약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범죄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미흡했다고 여겨진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은 공식 통계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부재, 북한이탈주민의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이들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치유를 받지 못해서 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영구화되어 가고 있다(박동수, 2015; 신현주 외 2인, 2013).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검찰청, 법원, 경찰 등이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미흡해서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불안정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가 반복되고 점점 더 심각해진다면 이들로 하여금 각종 범죄행위를 범하도록 만들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거나, 재입북 또는 제3국 위장 망명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 기관들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예방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미래 남북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

며, 특히 전국의 신변보호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및 정착단계

1) 연도별 입국현황

< 표 1 > 의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6년 12월 말 현재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0,212명으로서 30,000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 후 2012년부터 북·중 국경통제 강화 및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강제복송 등으로 인하여 연간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임창호, 2016: 220).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북한이탈여성의 비율이 70%~8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북한 내에서의 이동이 수월하고, 중국에서도 가사 도우미 등 생계수단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남(명)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299	8,802
여(명)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9	21,410
합계(명)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30,212
여성 비율	78%	77%	75%	71%	73%	76%	78%	80%	79%	71%

* 합계는 2006년 이전부터 입국한 북한이탈주민까지 합산한 수치임. 2016년은 잠정적인 수치임.

*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

2) 정착단계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 표 2 >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에 따라 '보호 결정'이 내려지면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은 뒤, 5년간 거주지 보호를 받게 된다. 지역하나센터에서는 거주

지에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병을 인수하고, 거주지에 편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초기 집중교육(2주: 60시간)을 실시하고, 사후적인 지역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신속하게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표 2〉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정착단계

입국 및 정착단계	내 용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요청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 입국 지원
합동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 조사종료 후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보호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 결정 • 보호결정 세대단위 결정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1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심리안정, 진로지도 상담 등 • 가족관계등록, 주거알선 등 정착준비를 마친 후 거주지 전입
거주지 보호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 취업지원: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 교육지원: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보호담당관제: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제 운영
민간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응센터(지역하나센터) 지정 운영(초기집중교육 2주 60시간) • 정착도우미제: 민간자원봉사자와의 연계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종합상담, 생활안정, 취업, 교육 및 장학, 연구, 인식개선에 관한 지원 제공과 함께 민간자원 역량을 연계하는 거점 역할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

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단계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대책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보호담당관제도(거주지·취업·신변 보호), 민간 참여제도 등이라고 볼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현황

1) 1998년~2007년 범죄피해 통계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발생현황의 경우 < 표 3 > 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8년~ 2007년 1월까지 전체 북한이탈주민 8,855명 중 1.3%인 117명이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살인 등의 5대 범죄피해가 전체범죄 피해율의 50.4%에 이르고 있었다(김윤영, 2007).

< 표 3 >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통계(1998년~2007년 1월)

(단위: 건)

살인	5대 범죄					사기	유사수신	기타	계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2	2	2	2	48	59	46	5	7	117

자료: 김윤영, 2007: 44.

2) 2006년 범죄피해 설문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6년 7월~ 9월까지 전국 2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14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범죄피해 설문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 응답자 214명 중 50명이 사기, 절도, 강도, 폭행 및 성폭력 등의 범죄피해 91건을 당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개인의 피해건수로는 최저 1건에서 최고 8건의 범죄피해를 입었다. 응답자 중에서 범죄피해자는 전체의 23.4%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범죄피해율은 국내 평균치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준오·이정환, 2006: 79).

특히, < 표 4 >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기범죄 피해건수가 46건(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폭행 및 상해 피해가 11건(4명), 자동차 부품 절도 피해와 대인절도 피해가 각 2건(2명), 주거침입절도 피해, 대인강도 피해,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가 각 1건(1명)씩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1.5%가 사기범죄의 피해자로서, 한국 사기범죄의 전체 범죄발생 비율인 0.5%에 비해 무려 43배 이상 발생하였다.

〈표 4〉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현황

(단위: 명, %)		
범죄	범죄피해(명)	범죄피해 비율(%)
사기범죄	46	80.7
폭행 및 상해	4	7.0
자동차 부품 절도	2	3.5
대인절도	2	3.5
주거침입절도	1	1.7
대인강도	1	1.7
성폭력 및 성희롱	1	1.7
총계	57	100.0%

* 조사대상자: 북한이탈주민 214명.

* 자료: 장준오·이정환, 2006.

3) 2008년~2010년 범죄피해 경험 조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은 130명으로 전체 1,200명 중에서 10.8%를 차지하고 있고, 총 피해건수(149건)를 기준으로 보면 범죄피해율은 12.4%로 추정된다. 가장 빈발하는 범죄피해유형은 < 표 5>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 149건 중에서 사기범죄가 92건(61.8%)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폭행·상해·성폭력 등 폭력범죄가 44건(25.4%)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에는 개인 간의 돈거래 사기와 명의도용이라고 응답하였다(이창무 외 3인, 2010: 11).

〈표 5〉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실태(중복응답 허용)

(단위: 건, %)			
범죄피해유형	피해건수(%)	피해율(%)	
폭력범죄	폭행, 상해	34(22.8)	2.8
	성폭력, 성희롱	10(2.6)	0.8
재산범죄	일자리(구직) 사기	17(11.4)	1.4
	투자(부동산 등) 또는 알선 등의 사업 사기	22(14.8)	1.8
	북한가족 초청 사기	12(8.1)	1.0
	혼인사기	6(4.0)	0.5
	보이스 피싱(전화 사기)	35(23.5)	2.9
	절도	6(4.0)	0.5
기타	7(4.7)	0.6	
총 피해건수	149(100.0)	12.4(100.0)	

* 조사대상자: 북한이탈주민 1,200명.

* 자료: 이창무 외 3인, 2010.

4) 2012년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연구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20대~ 50대 북한이탈여성 1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폭력피해 탈북여성 맞춤형 자립지원방안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여성 8명 중 1명은 국내에서 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 및 유흥업소 종사자의 비율은 각각 4.3%와 11.4%로 나타났으며, 성매매 권유를 받은 비율 역시 30%라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여성의 유흥업소 성매매 인구가 약 2%인 것과 비교하여 성매매 종사경험은 2배, 유흥업소 종사경험은 약 5배 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서, 탈북 여성의 성 관련 범죄노출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재엽·김희진, 2012).

3.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 관련 제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정책과 관련된 각종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약칭으로 불리는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입국한 후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 머무르는 시설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단계를 위한 중요한 가교역할을 한다. 하나원으로 신병이 인도된 북한이탈주민들은 12주(392시간) 동안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을 받는다. 하나원의 교육과정은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우리 사회의 이해 증진, 초기 정착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보호담당관제도

정부는 하나원을 퇴소하고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주지보호 담당관, 취업보호 담당관, 신변보호 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거주지보호 담당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를 위임 받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장인 거주지보호기관장으로부터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의 56개 고용센터에 전문 직업상담사로 구성된 취업보호 담당관을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

상으로 하는 진로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상담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신변보호 담당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인 신변보호기관장으로부터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자를 의미하고, 현재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신변보호 담당자로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와 거주지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김운영, 2013: 51-63).

3) 법률적 지원제도

북한 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한 왜곡된 법의식, 1당 독재를 넘어서 1인 독재체제에 길들여진 후진적 법의식, 욕심과 무지 등이 결합되어 범죄율과 범죄피해율의 상승을 부채질한다.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법치주의가 무시된 북한 사회에서 생활했던 북한이탈주민의 태생적 한계는 이들에게 왜곡된 법적 경험과 법의식을 갖게 하여, 결국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에서 쉽게 범죄자가 되거나 범죄피해자로 남게 되는 경향이 있다(최영신, 2015: 144).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법률 강좌를 개설하고, 기초사회생활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상담기관과 연결해 주고 있으며, 무료 변호사 상담을 소개해 주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범죄피해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4) 민간 참여제도

거주지에 주택을 배정 받아 편입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도우미, 각 보호담당관,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기타 지역 민간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받고 있다.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23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착도우미는 민간자원 봉사자와 연계되어 있고,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91명이 전국에 배치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하면, 주거지 해당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신병을 인수하여 지역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 한 후 주거지로 안내한다. 또한,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1세대에 대하여 1~2명의 정착도우미가 배정되어 1년간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적응

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편입된 후 초기 2주(60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정착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내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가정생활 안정지원

국내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정서적 불안, 생활기반의 미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동등한 기회구조 편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한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각종 범죄에 이용되도록 만든다(최영신, 2015: 144).

북한이탈주민들은 헤어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 나쁜 건강, 습관화된 행동 및 사고 방식으로 인해서 장기간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 결과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관계 기관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가정생활이 원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6) 지역사회 참여활동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남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투리, 외래어, 신조어 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남한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연예인 이야기나 재미 있는 오락 프로그램 등의 이야기로 함께 웃고 떠들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왜 웃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인간관계 형성이 어렵다고 한다(이주호·배정환, 2011: 340).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보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봉사단체 및 종교단체에 가입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활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

4. 선행연구 분석

< 표 6 >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장준오·이정환(2006), 이창무 외 3인(2010)의 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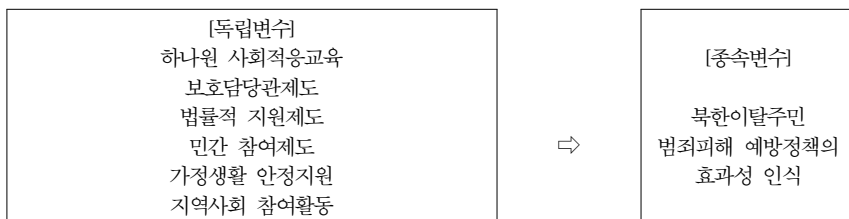
<표 6>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방법	연구방법	범죄피해 실태	예방대책
장준오 · 이정환 (2006)	2006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20세 이상 북한이탈 주민 214명의 범죄 피해 경험을 조사	26%가 사기범죄 피해를 당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 피해의 우선적인 대책 마련 •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 강화 • 여성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 • 기획탈북 브로커에 의한 문제점과 위험성을 고지
이창무 외 3인 (2010)	2000년 1월 1일 이후 한국에 입국한 2010년 6월 현재 전국 만 20세~65세 이하인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경험을 조사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00명 중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 중심의 협약체결 •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예방 지원에 대한 표준안 마련 • 통합 연결망 구축 •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대일 멘토링

Ⅲ.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신변보호 경찰관의 인식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들에 기초하여 < 그림 1 > 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H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은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보호담당관제도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법률적 지원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민간 참여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가정생활 안정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 지역사회 참여활동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2016년 11월 동안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 경찰관 830명 중에서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답변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107부를 분석하였다. 신변보호 경찰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지에 진입한 이후에 주기적으로 전화통화 및 대면접촉을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애로 사항들이 발생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은 신변보호 경찰관과 가장 먼저 연락하여 상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신변보호 경찰관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범죄피해 여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및 각종 지원 및 보호제도들의 효과성 여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연구대상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은 하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지원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적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교육기간(12주)은 적정하다(하나원 사회적응교육1), 교육 프로그램은 적정하다(하나원 사회적응교육2),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교육은 효과적이다(하나원 사회적응교육3),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교육은 효과적이다(하나원 사회적응교육4), 우리 사회의 이해증진 교육은 효과적이다(하나원 사회적응교육5), 초기 정착지원 교육은 효과적이다(하나원 사회적응교육6)의 6개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2) 보호담당관 제도

보호담당관 제도란 하나원을 퇴소하고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지보호 담당관, 취업보호 담당관, 신변보호 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담당관 제도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현재 보호 담당관의 활동은 전반적으로 효과적이다(보호담당관1), 취업보호 담당관의 활동은 효과적이다(보호담당관2), 거주지보호 담당관의 활동은 효과적이다(보호담당관3), 신변보호 담당관의 활동은 효과적이다(보호담당관4), 현재 신변보호제도는 전반적으로 효과적이다(보호담당관5), 신변보호 담당관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보호담당관6), 신변보호 담당관은 담당 북한이탈주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보호담당관7), 신변보호 방법은 적절하다(보호담당관8)의 8개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3) 법률적 지원제도

법률적 지원제도란 북한이탈주민들이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 변호사 상담지원을 제공하고, 법률적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적 지원제도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적당하다(법률적 지원1).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상담지원을 받는다(법률적 지원2).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률교육을 충분히 받는다(법률적 지원3).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찰, 법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다(법률적 지원4).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지원제도는 전반

적으로 효과적이다(법률적 지원5)의 5개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4) 민간 참여제도

민간 참여제이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정착도우미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 등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참여제도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현재 민간참여제도는 전반적으로 효과적이다(민간참여제도1), 남북하나재단의 지원 및 보호정책은 효과적이다(민간참여제도2), 지역적응센터(지역하나센터)는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민간참여제도3), 정착도우미제는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민간참여제도4),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는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민간참여제도5)의 5개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5)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이란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여 지역주민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협력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참여활동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지역사회 참여활동1), 지역사회의 종교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지역사회 참여활동2),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지역사회 참여활동3)의 3개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6) 가정생활 안정지원

가정생활 안정지원이란 북한이탈주민의 가정이 원만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범죄행위와 관련된 상황에 개입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생활 안정지원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가정생활은 원만한 편이다(가정생활 안정1), 북한이탈주민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가정생활 안정2), 북한이탈주민의 가정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가정생활 안정3)

의 3개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7)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제도 및 지원제도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수인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은 효과적이다'라는 단일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4.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령, 학력, 재직기간 등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수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Cronbach's Alpha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독립변수들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8.0을 활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및 논의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재직기간, 보안경찰 근무기간, 계급, 소속 지방경찰청은 < 표 2> 에서 보는 것과 같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보안경찰관(신변 보호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7년 이상 10년 이하의 경찰관이 26명(24.3%)으로 가장 많았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n=107)

성별	남성	91명(85.0%)	계급	순경	5명(4.7%)
	여성	16명(15.0%)		경장	8명(7.5%)
연령	20대	1명(0.9%)	소속 지방청	경사	25명(23.4%)
	30대	23명(21.5%)		경위	62명(57.9%)
	40대	50명(46.7%)		경감	7명(6.5%)
	50대	33명(30.8%)		서울	13명(12.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20명(18.7%)	부산	15명(14.0%)	
	2년제 대학 재학/졸업	9명(8.4%)	대구	3명(2.8%)	
	4년제 대학 재학	11명(10.3%)	인천	14명(13.0%)	
	4년제 대학 졸업	62명(57.9%)	광주	4명(3.7%)	
	대학원 재학·졸업	5명(4.7%)	대전	3명(2.8%)	
재직 기간	5년 이하	60명(31.3%)	울산	3명(2.8%)	
	6년-10년 이하	18명(9.4%)	경기남부/북부	11명(10.2%)	
	11년-15년 이하	19명(9.9%)	강원	8명(7.4%)	
	16년-20년 이하	34명(17.7%)	충북	5명(4.6%)	
	21년-25년 이하	29명(15.1%)	충남	6명(5.6%)	
보안 경찰 근무 기간	26년 이상	32명(16.7%)	전북	4명(3.7%)	
	1년 이하	11명(10.3%)	전남	10명(9.3%)	
	3년 이하	11명(10.3%)	경북	3명(2.8%)	
	5년 이하	14명(13.1%)	경남	4명(3.7%)	
	7년 이하	17명(15.9%)	제주	1명(0.93%)	
근무 기간	10년 이하	26명(24.3%)	합계	107명(100%)	
	15년 이하	19명(17.8%)			
	20년 이상	9명(8.4%)			

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추출모델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베리맥스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 표 3> 에서 보는 것과 같이 6개 성분이 추출되었으며, 6개 성분의 총누적분산비는 68.486%이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r- Meyer-

Olkin) 값은 .82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성형 검정치는 $\chi^2=2009.835$,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고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요인분석

	성분					
	1	2	3	4	5	6
보호담당관4	.851	.097	.090	.160	-.015	-.005
보호담당관1	.830	-.017	.158	-.044	.198	.047
보호담당관6	.790	.109	.086	.166	.041	.068
보호담당관5	.757	-.032	.148	.212	.045	.041
보호담당관7	.695	-.077	.078	.237	.132	-.046
보호담당관2	.663	.336	.246	-.091	.177	-.046
보호담당관8	.638	.080	.121	.251	.207	-.005
보호담당관3	.629	.330	.178	-.300	.011	.171
하나원 사회정착교육4	.162	.808	.107	.066	.026	.005
하나원 사회정착교육5	.107	.782	.047	.218	-.047	.204
하나원 사회정착교육1	-.008	.782	.181	.090	.248	.083
하나원 사회정착교육2	-.069	.730	.180	.194	.294	.117
하나원 사회정착교육3	.130	.680	.170	.149	.068	-.042
하나원 사회정착교육6	.046	.664	.230	.291	.006	.216
법률적 지원2	.173	.174	.867	.175	.053	.074
법률적 지원1	.117	.051	.802	.148	.073	.126
법률적 지원4	.225	.233	.784	.121	.060	.060
법률적 지원3	.189	.223	.782	.012	.158	.076
법률적 지원5	.185	.190	.667	.028	.275	.125
민간 참여제도3	.112	.291	.053	.738	.102	.035
민간 참여제도4	.116	.330	.048	.732	-.008	.138
민간 참여제도5	.243	.370	.008	.694	.034	.067
민간 참여제도2	.252	.096	.184	.690	.139	.115
민간 참여제도1	.021	-.048	.312	.676	.288	.169
가정생활 안정지원1	.173	.164	.026	.105	.798	.211
가정생활 안정지원2	.153	.078	.292	.117	.777	.085
가정생활 안정지원3	.244	.165	.183	.168	.755	.106
지역사회 참여활동1	.078	.081	.242	.057	.239	.806
지역사회 참여활동2	.055	.179	-.078	.154	.037	.791
지역사회 참여활동3	-.050	.094	.298	.152	.140	.718

< 표 3 >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분 1의 경우 보호담당관1~ 보호담당관8의 8개 문항으로 묶였으며 '보호담당관제도'라고 명명하였다. 성분 2의 경우 하나원 사회적착교육1~ 하나원 사회적착교육6의 6개 문항으로 묶였으며 '하나원 사회적착교육'이라고 명명하였다. 성분 3의 경우 법률적 지원1~ 법률적 지원5의 5개 문항으로 묶였으며 '법률적 지원제도'라고 명명하였다. 성분 4의 경우 민간 참여제도1~ 민간 참여제도5의 5개 문항으로 묶였으며 '민간 참여제도'라고 명명하였다. 성분 5의 경우 가정생활 안정지원1~ 가정생활 안정지원3의 3개 문항으로 묶였으며 '가정생활 안정지원'이라고 명명하였다. 성분 6의 경우 지역사회 참여활동1~ 지역사회 참여활동3의 3개 문항으로 묶였으며 '지역사회 참여활동'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신뢰도의 경우 < 표 5 > 에서 보는 것과 같이, 6개 독립변수 모두 Cronbach's α 가 0.755~ 0.901로 나타났고, 종속변수의 경우 Cronbach's α 가 0.865로 나타났으므로, 각 설문문항이 요인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표 5〉 신뢰도분석

	변수	Chronbach's α
독립 변수	보호담당관제도	.897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887
	법률적 지원제도	.901
	민간 참여제도	.850
	가정생활 안정지원	.827
	지역사회 참여활동	.755

3. 기술 통계량

각 변수의 기술적 통계량은 < 표 6 >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독립변수 중에서는 보호담당관제도의 평균값이 3.29로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평균값이 2.24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범죄피해 예상의 효과성의 평균값은 3.32로 나타났다.

〈표 6〉 기술통계량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하나원 사회적응교육1	1.00	4.00	2.88	.904	
	하나원 사회적응교육2	1.00	4.00	3.04	.757	
	하나원 사회적응교육3	1.00	5.00	3.29	.755	
	하나원 사회적응교육4	1.00	5.00	3.04	.828	
	하나원 사회적응교육5	1.00	5.00	3.07	.76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6	1.00	5.00	3.11	.756	
민간 참여제도	민간 참여제도1	1.00	5.00	3.14	.798	
	민간 참여제도2	1.00	5.00	3.25	.790	
	민간 참여제도3	1.00	5.00	3.03	.823	
	민간 참여제도4	1.00	5.00	3.00	.829	
	민간 참여제도5	1.00	5.00	3.10	.889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1	1.00	4.00	2.20	.710	
	지역사회 참여활동2	1.00	4.00	2.59	.878	
	지역사회 참여활동3	1.00	5.00	2.45	.882	
독립 변수	가정생활 안정지원	가정생활 안정1	1.00	4.00	2.76	.759
		가정생활 안정2	1.00	5.00	2.21	.777
		가정생활 안정3	1.00	4.00	2.72	.783
법률적 지원	법률적 지원1	1.00	5.00	2.79	.897	
	법률적 지원2	1.00	5.00	2.63	.904	
	법률적 지원3	1.00	5.00	2.45	.838	
	법률적 지원4	1.00	5.00	2.72	.917	
	법률적 지원5	1.00	5.00	2.64	.871	
보호담당관 제도	보호담당관제도1	1.00	5.00	3.39	.798	
	보호담당관제도2	1.00	5.00	2.93	.893	
	보호담당관제도3	1.00	5.00	3.22	.839	
	보호담당관제도4	1.00	5.00	3.69	.851	
	보호담당관제도5	1.00	5.00	3.50	.850	
	보호담당관제도6	2.00	5.00	3.48	.771	
	보호담당관제도7	1.00	5.00	3.44	.791	
	보호담당관제도8	1.00	5.00	3.31	.927	
종속 변수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1.00	5.00	3.37	3.37	.946

각 변수에 대하여 상관관계 분석(Pearson 상관계수)을 실시한 결과, < 표 7>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은 하나원 사회적응교육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454)으로 나타났고, 보호담당관제도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것(.279)으로 나타났다.

< 표 7>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보호 담당관제도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279**	1						
법률적 지원제도	.428**	.404**	1					
지역하나센터 교육	.432**	.623**	.481**	1				
민간 참여제도	.355**	.483**	.362**	.652**	1			
가정생활 안정지원	.401**	.341**	.443**	.403**	.387**	1		
지역사회 참여활동	.152	.326**	.349**	.403**	.344**	.378**	1	
범죄피해 예방정책	.227*	.454**	.428**	.425**	.385**	.437**	.399**	1

* p < 0.05, ** p < 0.01

4. 가설의 검증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 어느 제도들이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본의 회귀식 모형은 결정계수 수정된 $R^2 = .361$, $F = 9.333$, 유의확률 .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β)에 의하면,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 표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원 사회적응교육($\beta = .214$), 가정생활 안정지원($\beta = .2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중에서는 H1과 H6만이 채택되었고, 다른 가설들은 기각되었다.

〈표 8〉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73	.405		1.166
보호담당관제도	-.065	.109	-.056	-.597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248	.115	.213	2.163*
법률적 지원제도	.187	.099	.188	1.887
민간참여제도	.108	.111	.096	.971
가정생활 안정지원	.234	.109	.210	2.151*
지역사회 참여활동	.176	.100	.162	1.769

* $p < 0.05$

< 표 8 > 의 분석 결과는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과 가정생활 안정지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예방을 위해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에 지역적응센터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생계 유지 및 관심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하나원에서의 사회적응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선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므로 체계적으로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생활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금(기본금, 지방거주 장려금,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및 사회보장제도에만 의존한다면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더욱 증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 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받은 경우에 북한이탈주민은 쉽게 사기범죄 및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호담당관제도, 법률적 지원제도, 민간참여제도, 지역사회 참여활동은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의 효과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보호담당관제도 중에서 거주지보호 담당관제도와 취업보호 담당관제도들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법률적 지원

제도는 단순한 법률상담에 그치고 실질적인 소송지원 등을 하기에 부족하고, 민간참여제도의 경우 여전히 일반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참여하기 보다는 남북하나재단 및 지역적응센터 등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또한 미흡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집단 거주지역에서 자신들끼리만 어울리는 과정에서 사기범죄 및 폭행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의 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서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의 내실화와 가정생활의 안정지원을 제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으로서 보호담당관제도의 확대와 민간참여제도의 확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보호담당관제도의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에 받게 되는 3가지 종류의 보호담당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제도는 안정적 직업을 통한 자립·자활을 유도하고, 일반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거주지보호 담당관과 취업보호 담당관의 실질적인 인력증원을 통해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신변보호 대상자 가급과 나급은 신변보호 경찰관 1명 이상을 배정하여 신변을 보호하기 때문에 840여명의 신변보호 경찰관들이 실질적인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신변보호 경찰관 1인당 신변보호 대상자 수를 현재

33.3명에서 15명 수준으로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김윤영·이상원, 2014: 174).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성별·연령·학력·직업·종교 등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유와 가치관을 갖고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어서 이들 각각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신변보호 경찰관을 배치하여 상호 신뢰 및 상호 소통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범죄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이들에게 각종 정보들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과 신변보호 경찰관 간의 연락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기간 동안 연락체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각종 장려금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임창호, 2016b: 239).

2. 민간 참여제도의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착교육에 필요한 전문분야의 경우 시민단체의 참여 폭을 넓히고,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고민을 상담하고 사회 부적응 문제들을 수시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적응센터 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응센터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집중 교육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예방 거버넌스는 사전 범죄피해 예방과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한 사후적 활동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되어 범죄피해예방 거버넌스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범죄피해예방 관련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관련 기관들 간에 통합 연결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로부터 보호와 범죄피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창무 외 3인, 2010: 23).

3.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의 내실화

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기관인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는 ‘우리사회의 이해 증진’과정을 운영하여 생활법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단기간 교육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의 법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법률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원의 법률 교육과정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기범죄의 경우 일확천금의 유혹으로 인해서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면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세밀하게 관찰해 본다면, 이들이 지역사회 편입 이후에 보여주게 될 행동들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으므로, 범죄피해 가능성이 높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미리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임창호, 2016b: 239).

게다가, 범죄피해의 경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범죄피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자의 보호를 받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및 지역적응센터 등 민간참여제도를 통해서 각종 지원 및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운용한다면 범죄피해로부터 2중, 3중의 방어장치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가정생활의 안정 지원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가 지급한 정착금 및 장려금을 본인 및 가족들의 국내 입국 경비를 비롯하여 사기와 투자 실패 등으로 탕진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유혹에 빠져서 마약, 문서 위·변조, 절도, 사기, 폭행, 성매매, 보험사기 등의 각종 범죄환경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의존형 경제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의 잘못으로 사기피해를 당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극복

할 다른 대체수단이 부족하여 쉽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서 경제적 압박의 장기화로 각종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저소득층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누군가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한다면 귀가 솔깃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사기범죄자의 매력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이동임·천정환, 2013: 171).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북한 또는 제3국에서 취득한 학력, 직업, 자격증, 기술을 최대한 인정하고, 재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안재운, 2005: 75).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취업연계가 아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취업뱅크 형식의 전문 그룹이나 배너를 형성하여 자활을 위한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연계되는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취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창무 외 3인, 2010: 24).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사회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심각한데 비해서 각종 보호 및 지원정책은 매우 미약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관계 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서 이들이 범죄피해를 당한 후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하지 못한다면, 범죄피해를 당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반사회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사회적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선행 실증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신변보호 경찰관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야 함으로써 현행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의 문제점을 더욱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경험하는 범죄피해인 사기범죄 및 폭행범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연구 또한 매우 가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엽·김희진 (2012). 폭력피해 탈북여성 맞춤형 자립지원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윤영 (200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 김윤영 (2013). 보안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개선방안. 신변보호 경찰관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소.
- 김윤영·이상원 (2014). 신변보호 경찰관의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방안. 인문사회과학연구 제44권, 157-182.
- 박동수 (2015).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고찰. 입법정책 제9권 제1호, 1-33.
- 송관 (2001). 탈북자의 직업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신현주·김미숙·김주찬 (2013).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통일 연구, 제17권 제2호, 103-129.
- 안재운 (200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일탈 실태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동임·천정환 (2013). 북한 이탈주민의 사기범죄 피해방지 및 피해회복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169-191.
- 이주호·배정환 (2011).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연구: 충청북도 내 북한이탈주민 지원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7호, 335-344.
- 이창무·김주찬·한상철·신현주 (2010).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 분석을 통한 정착지원 거버넌스 구축방안.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임안나·강길봉 (201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부적응 예방을 위한 교정복지의 역할: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제29권, 93-117.
- 임창호 (2016a).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과적인 보호 및 지원방안. 경찰학논총, 제11권 제4호, 91-119.
- 임창호 (2016b).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 한국경찰경비학회 제49권, 215-246.
- 장준오·이정환 (2006).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동운·김용태 (201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2호, 25-50.
- 최영신 (2015). “범죄예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 수요 분석”. 법교육연구 제10권 제3호, 141-169.

【Abstract】

The Factor Influencing to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Policies of the Criminal Victim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Lim Chang-Ho · Kim Yu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crime victimization by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examine whether any of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s for defector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ived effectiveness for preventing the criminal victim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7 police officers from the 17 provincial police departments. Independent variables were (1) social adaptation education in Hanawon, (2) protection officer system, (3) legal support system, (4) private participation system, (5) support for family life, (6) community participation activity.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crime prevention effectiveness for the defector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of crime victimization were protection officer system and support for family life. First, in order to prevent the crime victim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advance, three kinds of protection officer system that will be received after the transfer of the residence should play the role successfully. Second,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alone are insufficient for the early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upport and protection programs for North Korean refugees through cooperation with civic organiza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egal education time so that North Korean defectors do not suffer crime because of lack of legal knowledge. Fourth, in order to prevent North Korean defectors from being victimized by various kinds of crim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upport them so that family life can be stabilized.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 Criminal Victimization, Security Police, Protection Officer System, Private Participation System